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7일, 서일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일준 의원)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시·도별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12조 및 제20조).

[표 1]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br>-----.                    |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u> -----<br>-----<br>-----<br>-----<br>-----<br>-----<br>-----<br>-----<br>-----<br>-----. |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생략)                                                                                                                                                                                   |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② <u>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
|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별</u> -----<br>-----.                                         |

|                                                                                                               |                                                                                                           |
|---------------------------------------------------------------------------------------------------------------|-----------------------------------------------------------------------------------------------------------|
|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br>----지원(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br>-----.                                                                       |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br>-----<br>-----.<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급격히 변화하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대규모 지식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국가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의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러닝 활성화 대책의 추진 주체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 산업 발전 등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지역 현실에 맞게 추진·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지원 대책(제9조<sup>1)</sup>, 제12조<sup>2)</sup> 및 제20조<sup>3)</sup>)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으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sup>5)</sup>는 2021년 7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을 심의하면서 현행법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창업지원계획 수립, 이러닝지원센터 지정 등의 7개 사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음.

[표 2]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2021년 7월)에 따른 이양 사무 현황

| 사무내용(관련 조항) |                                      | 현행 주체 | 이양 후 주체 |
|-------------|--------------------------------------|-------|---------|
| 2개 사무       |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법 제9조) | 국가    | 국가, 시·도 |
| 2개 사무       | 이러닝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투자, 지원(법 제12조)     | 국가    | 국가, 시·도 |
| 3개 사무       | 이러닝센터의 지정, 지정취소, 청문, 경비 지원(법 제20조)   | 국가    | 국가, 시·도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 폐지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편됨.

5)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전문인력 양성, 이러닝사업 창업지원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현장 중심의 이러닝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의 이러닝 산업육성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 접근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같은 사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성민)

서일준위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지원”을 “지원(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부”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같은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u>정부</u>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정부는</u>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생략)</p> <p><u>&lt;신 설&gt;</u></p> | <p>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br/>-----.</p> <p>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u>-----<br/>-----<br/>-----<br/>-----<br/>-----<br/>-----<br/>-----<br/>-----<br/>-----<br/>-----.</p> <p>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시·도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

|                                                                                                                                                                                                                                                                                                                                       |                                                                                                                                                                                                                                                                                       |
|---------------------------------------------------------------------------------------------------------------------------------------------------------------------------------------------------------------------------------------------------------------------------------------------------------------------------------------|---------------------------------------------------------------------------------------------------------------------------------------------------------------------------------------------------------------------------------------------------------------------------------------|
| <p>② <u>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 <p>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별 -----.</u></p>                                                                                                                                                                                                             |
| <p>제20조(이러닝센터) ① <u>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u>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u></p> <p>⑤ (생략)</p> | <p>제20조(이러닝센터)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지원(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으로 한정한다)-----</u><br/>--.</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u><br/>-----.</p> <p>④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u><br/>-----<br/>-----<br/>-----<br/>-----.</p> <p>⑤ (현행과 같음)</p> |